

---

# 2017년 1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2017. 7.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 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7.26.(수) 10:00 ~ 12:10
- ◆ 장 소 : 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김지미, 권혜진, 송시강, 안희철, 한상희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3건, 사전심의 1건
  - (2017-29)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 대상자별 성별, 연령, 체중, 사업 전후 혈액검사결과
  - (2017-30)‘공항버스 6500번, 6600번 등 2개 노선의 노선변경안 협의 및 의견조회’ 결재문서
  - (2017-31)‘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관련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 결재문서
  - (2017-32)본인이 제기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당사자 등의 실명이 표기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부분인용
- 기각
- 인용
- 기각

【 의안번호 2017-29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참여 대상자별 성별, 연령, 체중, 사업 전후 혈액검사결과

〈○○○ 위원〉

-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은 4건이고, 이의신청 3건, 사전심의회가 1건입니다. 저는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김지미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권혜진 위원님, 송시강 위원님, 안희철 위원님, 한상희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참관을 위해서 자치구 심의회 담당직원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서울시의 사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 건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심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결정이 되면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심의위원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의안번호 제2017-29호 건강증진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안전 소관부서 팀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 ○○○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29호 건강증진과 소관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29호 건강증진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2016년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 대상자별 성별, 연령, 체중, 사업 전·후 혈액검사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진료정보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에 따라 진료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요청한 정보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팀장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의 주심위원 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혈액을 뽑아서 분석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혈액채취나 이런 과정들은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자료를 보면 이름은 없고 연번으로만 표기되어 있고, 나이, 성별, 혈액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결과만

나열된 겁니까?

<○○○ 주무관>

- 사업효과 평가를 위해서 정보제공자 대상자에게 학술목적 내지는 통계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전제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제공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개인식별자료는 이름이 삭제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서울시는 비식별자료만 갖고 있고, 최초에 데이터를 수집한 기관과 연계를 하면 식별성이 드러날 수는 있는 게 맞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이 데이터 자료도 결과보고서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데이터만 따로 받으신 겁니까?

<○○○ 주무관>

- 로우데이터는 최종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 위원>

- 청구인은 최종보고서를 보고 이견이 있으니까 로우데이터를 확보해서 본인들이 분석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비공개 사유를 의료법 등으로 하셨는데 저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의료법 조항을 보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 피청구인인 서울시가 이에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서울시는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정보의 당사자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의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

- 이 건은 보건소에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청구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병원에 청구를 했다면 의료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 의료법 제21조가 비공개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서울시는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과연 의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서울시는 로우데이터를 사실상 식별되지 않은 자료를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계학술 목적으로만 수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요즘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논의가 되게 많은데, 특히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 관련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식별된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 주무관〉

- 그것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자료이고 이것은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전·후 비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장이 다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건강영양 조사라든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이런 것은 그냥 일회성인 조사결과이고, 청구하게 되면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정보인 혈액검사를 사전, 사후 검사결과치 두 개를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조사들은..

〈○○○ 주무관〉

- 요즘은 대부분 청구를 하게 되면 공개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비식별화 시킨 후에 공개한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식별정보를 삭제한 것은 제공이 됩니다.

〈○○○ 위원〉

- 그러면 그 경우는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단순 조사목적의 설문조사 내지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진료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료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

○ 의료가 아니라 조사다?

<○○○ 주무관>

○ 네. 이것은 진료가 포함된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분들은 신사구체 여과율을 통해서 부작용이 있다 없음을 논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청한 것인데, 그 여부는 대상자들의 식생활, 섭식, 그리고 다른 약들을 먹었다는 것을 조사하지 않은 이상은 이 결과치만 갖고 확실하게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청구인이 물론 이 정보를 범외에 사용한다면 막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든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지금 공개 거부사유를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으로 판단했는데 정보공개법에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우데이터를 달라는 이유는 연구용역자료를 바탕으로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막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나이가 너무 특정되어 있어서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61세, 63세로 되어 있는 것을 60대, 50대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조치를 더 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의 문제와 정보공개 청구에서의 정보공개 거

부사유로서의 개인정보 문제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 정보 취득자는 보건소와 한의원인데 그분들이 취득 시 목적 자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외의 목적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받은 자료입니다.

<○○○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를 받고 이른바 개인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목적 구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문제이고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로 들어온 사항이고, 이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지 실제로 의료정보도 아니고 진료기록도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구용역의 자료가 되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주무관>

- 이것은 연구용역을 위한 자료이고 원자료는 사실상 학술목적이 끝났으면 폐기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 위원>

- 그런데 폐기를 안 하시고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공개하는 것이지 이것이 폐기대상인지 아닌지가 정보공개법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일단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거부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 물론 이 정보가 전부공개가 되든 부분공개가 되든 이것이 어느 정도 논란이 예정되어 있어서 부담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정보공개법의 취지는 원래 그런 논란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니 그 취지를 감안해서 만약에 정 우려된다면 말씀드린 식별화 가능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해서 제공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주무관〉

- 1차로 정보를 취득한 보건소와 한의원이 사실상 또 하나의 민원거리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위원〉

- 그래서 정보공개법에는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청취 절차가 있고, 지금 이해당사자는 개인정보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해당할 수 있으니 법에 의해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판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발이 우려되어 가지고 안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 서울시에 제출하는 순간 이것은 금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그쪽도 알고 있는 겁니다.

〈○○○ 위원〉

- 저도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이 로우데이터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니까? 이것이 용역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는 연구팀이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것인데, 서울시가 굳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없는데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뭘니까?

〈○○○ 주무관〉

- 사실상 안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 공개청구 건으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갖

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서울시에 없어야 되는 데이터고, 연구팀에서 시청으로 제출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이 신청이 들어올 당시는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까?

<○○○ 주무관>

-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이후에 별도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 위원>

- 원래 보유하지 않은 자료라면 정보부존재로 답변을 하면 될 사항 아니었습니까?

<○○○ 위원>

- 발주처 입장에서는 결과를 검증해야 되니까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면 로우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검수팀의 누군가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 위원>

- 그런데 틀림없이 정보 제공자들한테는 학술목적으로 쓴다고 했지 검증목적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서울시에 잘못 제공한 것이죠.

<○○○ 위원>

- 글썄요. 제가 보건대는 당연히 이것이 서울시 사업인 것을 알고 있었을 테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했으면 이것이 이 연구결과서에 들어감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

- 저는 목적 외 사용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법제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을 때 법제 검토자료 모두를 다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건네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결과물만 주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저의 책임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 위원>

- 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결과가 안 붙으면 그 연구용역결과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 위원>

- 그런 환경영향평가하고 다른 점은 이번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면 민감정보로 정말 명시적인 동의가 있지 않는 한 건네줄 수 없는 자료입니다.

<○○○ 위원>

- 네, 물론이죠.

<○○○ 위원>

-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정보의 제공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것은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구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나이, 성별, 체중까지 되어 버리면 이것은 거의 식별 가능한

정보가 된다고 보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비공개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간사>

-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계시면 보유한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이 시에서 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무관>

-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으니 추정한 것입니다.

<○○○ 위원>

-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답변을 마치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부존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최종보고서는 나왔습니까?

<○○○ 주무관>

- 네, 보고서는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제공했습니다.

<○○○ 위원>

- 혈액검사결과는 비식별화 되어 있지만 각 개인별로 쪽 나열되어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세, 62세면 60대라든지 이렇게 총계 처리되고 범주화 된 자료가 그 결과보고서에 들어있습니까?

<○○○ 주무관>

○ 결과보고서에는 연령대별이 아니라 전체 참여군의 전·후 평균값만 들어있습니다.

<○○○ 위원>

○ 그 정도 평균값이 제공됐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공개했을 때 이해당사자들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비공개 사유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제공 대상자 자체가 625명이어서 어느 정도 식별 가능한 정도의 데이터셋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빅데이터의 의료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기준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총계처리와 범주화된다면 그런 것들은 공개 가능한 이런 지침들이 있어서 혹시 기존 연구결과보고서에서 전체 총 평균이 아니라 조금 더 범주화된 통계들은 제공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그것은 아예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가 나이 정보인데 나이를 범주화를 해서,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 71세인데 70~75세, 이렇게 공개할 수는 있습니까?



<○○○ 위원>

- 아니면 나이와 성별을 다 삭제해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검증할 수가 없죠.

<○○○ 위원>

- 이것을 분석하려면 나이와 성별이 중요한가 봅니다.

<간사>

- 나이하고 성별이라고 하는 정보를 삭제하면 이 옆에 있는 데이터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나이하고 성별하고 이 정보하고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600명이 넘는다는데 이 600명을 개별로 분석해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이것을 범주화하면 그 데이터 분석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범주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이밖에 없습니다. ‘1번 나이 71세’인데 그것이 아니고 ‘1번 나이 70대 초반’,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청구인한테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죠.

<○○○ 위원>

- 종합적인 이유를 고려했을 때 나이와 성별이 범주화된 채로 부분공개로 나갔을 때 이것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재식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나이와 성별을 일단 모두 삭제하고 부분공개 하고, 그 다음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간사>

- 지금 자료가 PDF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받을 때 엑셀로 받았습니까?

<○○○ 주무관>

- PDF로 받았습니다.

<간사>

- 제가 볼 때는 제공하는 파일 포맷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엑셀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엑셀파일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한다면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엑셀로 받는 것이 훨씬 낫겠죠.

<○○○ 위원>

- 분석을 하기 좋으니까 그렇네요.

<○○○ 위원>

- 그러면 결론들을 각자 내신 것 같으니까 의견들을 한 분씩 취합해 보겠습니다. 주심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죠.

<○○○ 위원>

- 저는 일단 비식별화 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해도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이상은 의료법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인 성명서를 보니까 청구인이 결과보고서의 문제들을 주장하는데 남녀에 따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데, 나이에 따라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나이만 비공개하고 성별은 공개해도 그 정도면 식별하기가 어려워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는 비공개하고 성별은 공개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 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이 정보는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와 성별 모두 가리고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님에 찬성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비식별화된 정보의 개방 취지가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초점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보네트워크, 경실련,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누출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 현재 625명의 데이터셋은 재식별화가 가능한 정보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청구인에게 성별과 나이를 다 제공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괜찮은지 청구인에게 묻는 절차를 거치거나 개인 정보는 제거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이 건에서의 쟁점은 결국은 재식별화 가능여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사실 연번 1번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특히나 의료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 위원님과 ○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해서 나이와 성별은 비공개하고 혈액검사 결과치만 공개하는 것으로 저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부존재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결정안 집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5명 중에 4명이 나이, 성별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부분공개인데 나이와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4명이 이의신청 건을 부분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부분인용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29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17-30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공항버스 6500번, 6600번 등 2개 노선의 노선변경안 협의 및  
의견조회' 결재문서

〈○○○ 위원〉

○ 제2017-30호 버스정책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팀장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담당자인 ○○○ 주무관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30호 버스정책과 소관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30호 버스정책과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  
은 공항버스 6500번, 6600번, 두 개 노선의 노선변경안 협의 및 의견조회  
결재문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공개 시에 타 기관과의 노선조정 협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기 어렵고, 미결정된 사항으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개인적 참고용으로 활용할 목적이고, 본인의 여건 상 비공개 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주무관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의 주심위원 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협의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 주무관>

- 일단 이 안전은 경기도 하남시하고 성남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쪽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위원>

- 하남시와 성남시가 서울시에 요청한 겁니까?

〈○○○ 주무관〉

- 아닙니다. 경기도가 서울시로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 노선(안)을 검토해서 다시 저희 안을 경기도 쪽으로 의견조회를 한 공문입니다.

〈○○○ 위원〉

-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이 아직 온 것은 없습니까?

〈○○○ 주무관〉

- 답변은 왔습니다. 그 안을 다시 반영하고 조정해서 다시 의견조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

- 다시 역제안이 와서 지금 다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 주무관〉

- 지금 이 안건은 다시 경기도와 협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노선이 변경되는 구간 자치구 주민들의 설문조사 등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컨대 한 9월 정도에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주무관〉

- 이 노선 자체가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류소가 아직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 노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단지에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기 전에 먼저 알려지면 주민들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어차피 설문조사를 하기는 할 텐데 그때는 다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저절로 알려지겠죠.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이르기 전까지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공개될 경우 혼란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은 5호 사유라기보다는 8호 사유 같은데 약간 섞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호와 8호, 이 두 가지 사유인 것으로 볼 때 부동산투기의 우려까지는 있겠습니까?

〈○○○ 주무관〉

- 실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 버스노선이 들어가는 단지가 있고 안 들어가는 단지



가 있는데 두 단지의 거리가 불과 1km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 위원>

- 그러한 부분은 5호의 사유는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버스노선 때문에 부동산투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서울시의 안과 경기도 안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주무관>

- 네, 일부 노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 위원>

- 단지 하나를 왔다갔다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5호에 해당할 경우에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 주무관>

- 실은 이 노선(안)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가 기관 대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선이 나간다고 하면 기관 대 기관 간의 약속이 무너지는 형태가 됩니다.

<○○○ 위원>

- 이전 정보공개 사례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현저하게 업무상에 지장을 초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향후 9월에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또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시한이 다 9월 이후에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쭙봤었습니다.

<○○○ 위원>

- 버스노선 조정 때문에 주민들이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해 가지고 기껏 해봐야 플래카드 붙이고 서명서 정도 돌리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요.

<○○○ 주무관>

-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3개의 시가 같이 엮여 있고,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 더 많이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할 때 어떻게 어느 쪽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이견이 좀 많습니다.

<○○○ 위원>

- 경기도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했겠죠? 경기도에서 공개됐다는 얘기는 못 들으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못 들었습니다. 아마 경기도도 아직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정보공개를 안 할 겁니다.

<○○○ 위원>

-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노선이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노선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경기도 노선도 있고, 서울시 노선도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도 조정이 되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까?

<○○○ 주무관>

- 네, 서울시 구간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 경기도와의 의견조정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주무관>

- 1차로 경기도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한 번 보냈고요, 경기도 쪽에서 저희 쪽으로 의견을 다시 보내왔고, 또 그것을 다시 한 번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조정되면 자치구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 위원>

- 그것을 9월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주무관>

- 9월에 협의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 이분이 이의신청까지 하는 것은 궁금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숨길 것도 없고 협의가 덜 진행됐기 때문에 안 하는 것에 불과한데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협의 진행 중이라서 제공을 못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향후계획’이라고 쓰신 이 부분을 거칠게 다듬어서 ‘9월 달 정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때는 저절로 공람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렇게 하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심위원인 저의 의견은 공개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특징이 있어서 미리 협의 진행 중에 공개가 될 경우에 경기도와 원만한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특히 경기도는 기초단체들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만, 이미 주무부처에서 언젠가는 공개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다면, 그냥 ‘5호 사유로 해서 거부합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부기를 하셔서 ‘우리 일정이 9월 달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그때는 저절로 공람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라.’라고 하는 내용을 부기해서 정보를 거부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향후계획을 보면 '9월 이후' 라고만 되어 있지 언제까지 마지노선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최종 언제까지는 일정이 있으신 것이죠?

<○○○ 주무관>

- 일정을 저희가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향후 한 번 정도 협의를 더 보면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9월 정도로 예정기한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의견조율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협의가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그것에 따라서 최장 올해 안에는 가능하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 늦춰진다 하더라도 10월, 11월 이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주무관>

-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답변을 드렸을 때 '이 안건이 확정된 이후에는 공개될 것이다.'라고 저희도 비공개 통보할 때 그 문구를 넣어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 위원>

- 그렇게 하면 1년이 가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니까 '9월 예정' 이렇게라도 해서 개략의 일정이라도 나와야만 아마 만족할 것 같습니다.

<○○○ 주무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언제 예정이라는 것도 공공정보니까 공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맞습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저는 사실 오래된 도시라면 부동산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자체가 지금 보니까 아직 입주가 안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아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신도시는 버스노선에 따라서 아파트값과 학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8호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그러면 5호가 충족이 되어도 8호 때문에 나중에 또 거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현재로서는 5호하고 8호가 같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어쨌든 약속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다시 5호, 8호 다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 위원>

○ 저도 다 동의합니다.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그러면 5호, 8호를 거부사유로 하되 5호에 대해서 9월경에 의견수렴절차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공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부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 5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30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의안번호 2017-31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 결재문서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7-31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팀장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31호 도시철도계획부 소관 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31호 도시철도계획부 소관 청구인 이의신청 건입니다. 청구인은 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 결재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결정통지내용으로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알 수 없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소관부서 과장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 과장〉

- 지금 직결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아직 정책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9호선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시를 압박하고 있어서 우선 직결차량을 구매만 하고 대신에 직결차량을 9호선만 운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

- 방금 간사님이 낭독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 것이죠?

〈○○○ 과장〉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 위원님께서 주심위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지금 비공개 정보가 문서번호 5332, '도시철도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관련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 이 부분이죠?

<○○○ 과장>

○ 네.

<○○○ 위원>

○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건보다는 오히려 첨부문서에 첨부했던 부분의 공개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지금 본문 문건은 간단해 보입니다.

<○○○ 과장>

○ 첨부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본문에도 첨부문서와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9호선 구간에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직결차량을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것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국비지원과 운영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데 협상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직결차량을 사놓고 왜 직결을 하지 않고 굳이 9호선에서만 사 용하느냐'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 내부적인 결정은 차량을 발주해서 9호선 구간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 과장>

○ 직결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되어야 직결을 할 수 있는데, 국토부에서 직결차량을 우선 구매하라는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직결에 찬성을 하지 않지만 다른 사

업들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직결차량만 우선 구매하고, 9호선 구간에만 운영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 위원>

- 지금 국토부에서는 직결하면 좋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 비용과 운영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 과장>

- 직결에 따른 우리 시의 실질적인 이익과 승객 편의는 사실상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직결하게 되면 운영비와 시설투자비는 늘어나게 됩니다.

<○○○ 위원>

- 그 운영비나 제반경비를 서울시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직결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경비의 액수를 어느 정도로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논의과정에 24량을 우선 발주한다는 계획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 과장>

- 서울시가 일반차량보다 비싼 직결차량을 구매하고도 9호선 구간에만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위원>

- 국토부가 협상테이블에 나올 때 서울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정보공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됐을 때와 공개되지 않았을 때 협상의 난이도의 차이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데 시민이 그 부분을 안다고 해서 이 당사자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과장>

- 협상과정에서 서울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상대방은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협상과정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 위원>

- 이것이 공개됐을 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뭘니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직결해서 추가비용이 들 것 같으면 당연히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협상력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 과장>

- 직결차량이 일반차량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는 9호선에만 운행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위원>

- 직결차량과 일반차량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 과장>

- 1량에 약 7, 8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서울시는 9호선 증차를 해야 되니까 차량 증차계획을 수립했는데, 국토부가 증차할 때 자꾸 직결차량으로 증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 과장〉

- 저희 증차하고 관계없이 직결차량을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증차에 직결차량 포함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최종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 위원〉

- 서울시민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서울시민 입장에서라도 강남에서 한 번에 공항으로 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문서를 보낸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입장에 관한 것만 공개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왜 공개될 경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 과장〉

-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매일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가야 되는 분이 있다면 직결차량 구매해 놓고 직결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아니라 우리시에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 위원〉

- 그것은 원래 공무원이 감수하셔야 될 일입니다.

〈○○○ 과장〉

- 협상이 끝났다고 한다면 충분히 감수를 합니다. 그런데 협상이 되기도 전에는 협상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 위원〉

- 직결에 대한 최종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부

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 과장>

- 직결차량 구매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협상 진행에 따라서 직결차량 구매 전이라도 취소가 가능한데, 그런 비판여론으로 인해서 협상에 있어서 서울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 “직결차량 24량을 연내 발주하여 9호선 구간에 운영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 과장>

- 직결차량을 구매 발주하고 제작하는 데 약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운영비에 대한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원>

- 제가 여쭙는 것은 24량을 올해가 별로 안 남았는데 연내에 발주하고, 그 다음에 직결과 관계없이 9호선 구간에 운영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 결정도 뒤집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까?

<○○○ 과장>

- 다른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 때문에 국토부하고 여기까지는 합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직결차량 비용도 국가가 대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주하기 전에 계속 협의를 하게 되겠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협상이 깨지게 된다고 그러면,

<○○○ 위원>

- 그러니까 발주하는 것은 확정인데 발주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적인 부담의 문제 이런 것은 아직도 협의과정이니까 거기에서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하거나 서울시의 계획에서 빗나갈 수는 있다는 이런 취지이신 것이지 아닙니까?

<○○○ 과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지금 아직 발주는 안 한 것이죠?

<○○○ 과장>

- 네, 발주 안 됐습니다. 아직 사양 협상도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24량을 발주하는데 차량의 비용도 국가가 좀 부담 하라는 입장이지요?

<○○○ 과장>

- 지금 직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예를 들자면 ‘최소한 7억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라’라고 협상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 과장>

- 7억이 아니고 차량비 전체입니다.

<○○○ 위원>

- 그것도 좋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협상의 대상인데 발주를 한다는 사실은 서울시가 여태까지 정해놓은 거의 확정된, 나중에 바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발주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 과장>

- 네.

<○○○ 위원>

- 그 비용을 국가가 다 부담하면 제일 좋고, 어찌면 서울시가 조금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차량은 아직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발주할 계획이고,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24량을 발주해서 직결여부와 관계없이 9호선에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이 현재의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발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계약을 얼마에 할 것이냐, 국고를 얼마 받을 것이냐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고, 지금 현재는 24량을 발주해서 9호선에 투입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계획은 국토부도 알고 서울시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

- 네.

<○○○ 위원>

- 지금 여기 공문서에 나와 있는 유일한 확정된 사실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왜 협상력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공개되고 나서 신문상에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12월 달쯤 가서 '서울시는 이렇게 결정하고 공개했지만 국고 지원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 변경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과장>

-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공개되어서 언론에 나가게 되면 이미 서울시는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고, 이는 직결운행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협상 상대방이 계속 버티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만 보면 정책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 직결정책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점은 결정을 했지만 나중에 국고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계획을 취소한다, 변경한다라고 공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과장>

-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점에 대해서 시를 비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위원>

- 아니요. 그것은 정책결정자가 부담해야 될 비난이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정책도 얼마든지 변해야 됩니다.

<○○○ 과장>

-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비난을 예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그 비난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 위원>

- 법령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법률과 명령에 따라서 비밀로 정하거나,” 비밀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공문 보내면서 비공개로 처리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잘 아시죠? 이 정보가 “법률에서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입니까?

<○○○ 과장>

-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비공개로 했습니다.

<○○○ 위원>

- 이 정보의 비공개를 법률로 비밀이나 비공개로 지정했습니까?

<○○○ 과장>

- 비공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

- 그것은 그 기관에 ‘이거 앞으로 공개하지 마세요.’ 하고 협조를 구한 것이고,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한 것하고는 다르죠. 비밀 지정절차 거쳤습니까?

<○○○ 과장>

- 비밀까지는 아니고 비공개로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 위원〉

- 그러면 1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5호에 따라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효율적인’ 수행이 아니라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 과장〉

-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상과정에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 그것이 공정한 것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 과장〉

- 판단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정한 출발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 두 가지 사유인데,

〈○○○ 과장〉

- 비공개 부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 위원〉

- 법률과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입니다. 그냥 기안할 때 저쪽 기관에다가 ‘비공개로 협조요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비밀이죠.

<○○○ 과장>

- 물론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공개 요구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비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비공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해도 될 만한 정보는 공개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이 공문의 성격이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직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가 가져야 될 지위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있을까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렇게 되면 국토부나 인천시로부터 저희들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 연내 발주일정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과장>

- 아직 일정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개략적으로 사양 협의를 하는 데 2개월 정도 소요되고, 합의하고 발주서를 만드는데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서 발주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연내이나 내년 초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 위원>

- 차량을 제작하는 회사하고 협의는 시작됐습니까?

<○○○ 과장>

-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사양협의를 차량 제작사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쪽 구간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철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직결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어야지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는 공개된 자료입니까?

<○○○ 과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여기에 상세한 내용이 더 많은데요.

<○○○ 과장>

○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는 차량발주를 못하겠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국토부하고 기재부 압박으로 해서 일단 직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누가 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협의하고 우선 발주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

○ 지금 비공개 사유를 5호로 하셨고, 해당 문서에 5호 사유가 있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정리되셨으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결정되어 있는 정책방향이고, 저는 이것 자체가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담당부서의 이유에 잘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

상에도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굳이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그래서 5호 사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저도 주심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전혀 이해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24량을 연내에 발주하고 9호선 구간 운영하고 이후에 그 뒤에 향후 관계기관이 직결에 합의할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5호 사유에 해당되어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있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또한 이런 정보가 공개되어서 인천시민이건 서울시민이건 활발히 논의되는 속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5호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이 문서를 보면 국토부와 연내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합의된 사항이고, 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비판여론을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직결에 합의할 경우에’ 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문서는 공개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히려 서울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이 투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홍보로 풀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단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5호 사유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직결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부담을 덜 했으면 좋겠고 인천시민은 인천시가 덜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언제쯤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개해 주라고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입니다.
- 정보공개법은 모든 부처에서 준수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 5호 사유라든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문서를 작업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1호와 5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해당문서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결국 결론은 5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유는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덧붙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에 5명이 이의신청 전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31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의안번호 2017-32 사전심의 】

안건명 : 청구인 본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설명이 표기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 회의내용 중 개인정보 등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32호 인권담당관 소관 사전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팀장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저는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라고 합니다.

〈○○○ 위원〉

○ 간사는 의안번호 제2017-32호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7-32호 인권담당관 소관 사전심의 건입니다. 청구인은 본인인

신청한 성희롱 사건 2건에 대한 실명이 기재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실명결정문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와 비공개시 청구인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사전심의를 요청해서 본 심의회에 사전심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팀장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팀장>

- 네.

<○○○ 위원>

-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주심위원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먼저 인권에 대해서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팀장>

- 해당 건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이 이 신청인 중심으로 여러 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건은 2건인데, 2건 다 본인이고 가해자가 달리 결정이 났습니다. 한 건은 상사인 ○○에 의한 성희롱 피해였고, 두 번째 건은 ○○에 의한 성희롱 2차 피해로 사건이 결정되어서 결정문이 통지된 바가 있는데, 저희가 통상 시민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결정 통지는 관련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조치기관에 모두 익명 처리

되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외부에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아니라 시 안에 있는 옴부즈만 제도이고, 내부의 성희롱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다양해서 약간의 정보만 제공이 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계속 돌기 때문에 사후 복귀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험부담 때문에 시민인권보호관이 계속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익명으로 통지를 해 왔습니다.
- 그런데 청구인은 1차 과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소청심사에 의해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건이 억울하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저희에게 익명으로 된 결정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피신청인이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적어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당사자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당초 결정문 상에는 실명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서 익명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저희가 조사기록을 뒤져서 그 결정문을 다시 수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서 심의회에 심의 상정한 건입니다.
- 두 번째 건도 역시 ‘행위자’ 라는 지칭이 바로 1차 성희롱 사건의 A를 뜻합니다. 그 ○○ 역시 이 결정문 상에서도 ‘행위자’ 라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결정문을 다시 실명으로 수정해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비공개 결정하고 올렸습니다.
- 다만 저희는 사실 이 의견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건이기는 합니다만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참고인이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굳이 제공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침해적 소지가 있을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 사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로 해 왔던 것인데 공개하는 것이 혹시라도 피신청인이 이미 소청심사를 통해서 원인무효 판결을 받았는데 불이익이 가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 염려되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 신청인이 소청에서 기각이 되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까?

〈○○○ 팀장〉

- 일반민사로 간다고만 들었습니다.

〈○○○ 위원〉

- 소청이 되어서 더 이상 다투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시는 것이죠?

〈○○○ 팀장〉

- 그것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 위원〉

-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은 신청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다 보내주는 겁니까?

〈○○○ 팀장〉

- 네, 시 인권기본조례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보통 재판이나 재결이 아니고서는 그냥 처분서인데 판결문처럼 신청인과 피신청인 다 적혀 있어서 더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직접 처분을 하지 않고 처분이 포함된 내용을 서울 시장에게 권고할 뿐입니다. 결정문이 조사과로 보내지면 인사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과에서 양정을 한 다음에 인사위원회로 심의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위원>

- 지금 감봉 1개월이 취소된 분이 A씨인 것이고,

<○○○ 팀장>

- 네.

<○○○ 위원>

- 그리고 B가 현재,

<○○○ 팀장>

- 현재 ○○입니다.

<○○○ 위원>

- 현재 같은 팀에 근무합니까?

<○○○ 팀장>

- 아닙니다.

<○○○ 위원>

- 그러면 당사자들한테 간 결정문에 이름이나 이런 것은 다 가려져 있습니까?

<○○○ 팀장>

○ 네, 익명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위원>

○ 익명처리된 결정문을 받아봤는데 이름이 없으니 이름이 기재된 것을 달라는 겁니까?

<○○○ 팀장>

○ 그렇습니다. 참고인이나 행위자는 결정문 본문상에도 참고인 1~8, 행위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실명으로 거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름은 저희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습니다.

<○○○ 위원>

○ 차제에 결정문 형식을 개선하면 어떻겠습니까? 판결문의 경우는 당사자에게 주면서 원고, 피고를 동그라미 쳐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민원의 경우는 보통 당사자에게 처리결과가 통보되는데, 이 결정이 판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논란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대일로 통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면 이런 논란은 필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 팀장>

○ 다 알죠. 조사를 다 했고 문답서를 받기 때문에 다 관계를 알죠.

<○○○ 위원>

○ 다만 궁금한 것은 참고인이 누구인가.

<○○○ 팀장>

○ 네, 어떤 참고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 위원>

○ 현재로서는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신청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고로 지정해서 소장을 내면 되니까요.

<○○○ 팀장>

○ 그런데 청구인이 첫 번째 결정문 참고인 중 ‘참고인 6’에 대한 성명을 요구하는데,

<○○○ 위원>

○ 그러면 ‘참고인 6’이 그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 팀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참고인 6’을 피고로 지정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참고인 6’과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 같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죠?

〈○○○ 팀장〉

○ 네, 그렇죠.

〈○○○ 위원〉

○ 주심위원님께서 의견 주시죠.

〈○○○ 위원〉

○ 한 번 더 의견을 듣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위원〉

○ 네, 의견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저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모두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기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 결정문의 형식을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 위원〉

○ 저는 신청인, 피신청인을 결정문에서 익명화 하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굳이 피신청인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청인, 피신청인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사실 참고인 자체를 보호해야 될 법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법원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담당



부서 의견대로 당사자는 공개하되 참고인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

- 어렵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름이 아예 언급 안 되고 대명사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참고인과 행위자입니다.

〈○○○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름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은 문서를 가공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죠. 그런데 소청심사 결정문만 하더라도 개인한테 송달이 될 때는 이름이 다 적혀서 송달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가려서 송달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

-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이지 않습니까.

〈○○○ 위원〉

- 그렇죠. 저는 사실 다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도 익명의 형태로 보내주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해서 실명으로 통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판절차에서 익명이라는 사실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뭔가 논의의 여지가 더 클 텐데요.

〈○○○ 위원〉

- 저는 원래 실명이 표기되지 않은 방식으로 작성된 부분은 그것을 수정해서 줄 필요는 없고, 결정문 전단에 신청인, 피신청인 부분은 실명으로 표기한 결정문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 피신청인 부분은 실명으로 표기한 부분은 공개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

- 저는 참고인과 행위자 부분을 비공개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결정문을 익명으로 통지했던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아예 처음부터 실명 결정문을 주거나 신청인, 피신청인란을 없애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저도 전체 비공개로 의견입니다.
- 그러면 집계결과 참석위원 5명 중에 3명이 사전심의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7-32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